

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25/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4. 7.

제 출 자 : 속 초 시 장

1. 제 안 이 유

농어촌 간이급수시설이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로로 규정 수도관리
업무가 보건사회부에서 건설부로 일원화 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

2. 주 요 골 자

종전 간이급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업무를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사회과
에서 관리하던 것을 수도법에 의하여 수도과에 관리토록 개정(제1조)

속초시조례 제 호

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"공중위생법 제31조" 를 "수도법 제3조"로 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이 조례는 <u>공중위생법 제31조</u> 의 규정에 의한 공동급수시설의 위생적이며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<u>수도법 제3조</u> ----- ----- ----- -----